

No. 381

재벌개혁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

조성재

재벌개혁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

1

주요 성과

□ 공정위 기업집단국 신설('17.9월) 이후 사익편취, 부당지원 등 총 20건 제재

○ 과징금 431.4억원 부과, 법인 11개·자연인 14명(총수 3명 및 총수 2세 2명 포함) 고발

- * ① [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하이트진로('18.1월), 효성('18.4월), 엘에스('18.6월), 舊 동부('18.9월)
- ② [지주회사 규정 위반] 에스케이(주)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정 위반('18.2월)
- ③ [대기업집단 시책 절차규정 위반] 부영('17.6월, '18.3월), 한진('18.8월) 등

□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 유도를 위해 정보공개* 및 재계소통** 추진

* 자발적 개선 사례 발표('18.2월) 및 순환출자 변동현황 발표('18.4월)

** 대기업 전문경영인 간담회('17.6월, '17.11월, '18.5월), 모범사례 발표('18.2월, '18.4월)

⇒ , 롯데, 대림 등 15 기업집단의 소유*·지배구조** 및 내부거래*** 개편안 발표·이행, 순환출자 고리**** 자발적 해소 유도

* 해신삼성 롯데 등, 지주회사 체제 전환(효성 현대산업개발) 및 정비(SK, LG 등) 등 소유구조 개선

** 전자투표제 도입(SK, 한화), 사외이사 기능 강화(삼성, 현대차, SK, LS) 등 지배구조 개선

*** 내부거래가 많은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축소(SK, LG, GS 등), 내부거래 중단(대림) 등

****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(자산 10조 이상) 순환출자 고리 수 : 93 ('17년 지정) → 5개('18.9월)

□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 및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독립성·투명성 강화를 위해 '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' 도입(복지부, '18.7월)

<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(스튜어드십코드) 주요내용 >

◇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기금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해 **적극적인 주주권 행사**

○ 주주권행사 범위는 자본시장법령상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·이행하고, 경영참여 주주권*은 제반여건 구비 후 이행방안 마련하여 시행하되, 그 이전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토록 함

* 임원 선임·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권(자본시장법시행령 §154)

◇ 정치·경제 권력으로부터 **독립성 강화** 위해 가입자대표 추천 전문가 중심(정부인사 배제)으로 구성된 「**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**」를 **설치·운영**하고 국민연금 주주활동 기준 행사 내역 등 공시

* 주주권행사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또는 결정, 기금운용본부 주주활동 점검 역할

□ 총수일가 전횡 방지를 위해 재벌총수 경제범죄 처벌기준* 강화(법무부, '18.6월)

* 횡령·배임죄 등에 관한 「검찰사건처리기준」 강화

□ 금융회사의 사금고화 방지, 금융그룹 리스크의 체계적인 감독을 위해 「금융그룹감독 모범기준」을 마련하여 시범운영 실시(금융위, '18.7월)

< 금융그룹감독제도 주요내용 >

◇ 감독체계·법령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, 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·집중위험·내부거래 관리 등 금융그룹별* 통합위험관리시스템 운영

* 대상 :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(, 한화, 교보, 미래에셋 현대차, DB, 롯데 등 7개)

◇ 그룹의 경영위기·실패가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

2

향후 추진계획

□ 대기업집단시책 개편을 위한 「공정거래법」 개정 추진(공정위, 상임위 계류중)

○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*, 지주회사 및 사익편취 규제 강화**, 기업집단 지정 기준 및 해외계열사 공시기준 변경*** 등

*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,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

** 신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을 요건 강화(상장 20% → 30% 비상장 40% → 50%),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확대(총수일가 보유 지분을 기준: 상장 30%/비상장 20% → 공히 20% 자회사 포함)

***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준 개편(10조원→GDP 0.5% 연동), 동일인에게 해외계열사 공시의무 부과

○ 여·야 이견이 크지 않고,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부터 우선 추진

□ 기업지배구조 개편 및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「상법」 개정 추진(법무부, 상임위 계류중)

○ 기본적으로 야당의 반대가 크지만,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* 도입, 전자투표제 의무화** 등 우선 추진

*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

** 실시여부가 회사의 선택사항에 맡겨져 있으나 일정 수 이상의 주주수를 가진 상장회사는 의무화

□ 금융그룹감독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「금융그룹감독법」 제정 추진 (금융위, 상임위 계류중)